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7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장외과생상품 계약의 경우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범위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 이전 소비자 동의 확보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금융소비자의 범위 조정(제2조제9항)

투자위험이 큰 장외과생상품 계약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 자문업자에게 전문금융소비자로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해야만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되는 자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확인범위와 맞추어 조정

나.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 절차 보완(제9조제3항)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그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아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 절차를 보완

다.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등 적용 시 일반금융소비자 확인수단 확대 (제10조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외에 금융 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도 허용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일반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도모

라. 부당권유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 축소(제15조제1항)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체결 권유행위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